

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(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)				
구분	증여자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)	수증자 (직계비속(영농자녀등))		
농지소재지 용도지역 요건	<p>①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<u>외</u>에 소재 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[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(제68조제4항 관련)]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<u>외</u>에 소재</p>			
면적	<p>가. 농지 : 4만 m^2 (12,100평) 이내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농지법 제2조(정의)</td> </tr> <tr> <td>가. 전 · 담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. 다만,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</td> </tr> </table> <p>나. 초지 : 14만8천 m^2 (44,921.25평) 이내</p> <p>다. 산림지 : 5년 이상인 산림지 29만7천 m^2 (89,842.5평) 이내 다만, 조림기간 20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 99만 m^2 (299,475평) 이내</p> <p>라. 축사용지 :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「건축법」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</p> <p>마. 어선 :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</p> <p>바. 어업권 : 10만 m^2 (30,250평) 이내</p> <p>사. 어업용 토지등 : 4만 m^2 (12,100평) 이내</p> <p>아. 염전 : 6만 m^2 (18,150평) 이내</p>	농지법 제2조(정의)	가. 전 · 담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. 다만,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	
농지법 제2조(정의)				
가. 전 · 담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. 다만,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				
재촌(거주자)요건	<p>농지소재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연접시군구 or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	<p>농지소재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연접시군구 or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		
(직접)자경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종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직접 영농 종사 증여일 이후 5년간 수증인 직접 영농종사(타 소득금액 이하요건 충족) 		
증여일 현재 나이요건		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		
소득요건	<p>증여일 소급 3년 총급여 · 사업소득*이 연간 3,700만원 미만</p>	<p>증여일 과세표준신고일 전부터 ~ 증여 일로 부터 5년간 총급여 · 사업소득*이 연간 3,700만원 미 만</p>		
사후관리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년간 직접 자경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금지 		
감면한도		감면 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 한도		
이월과세	<p>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불구하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득시기는 자경농민(증여자)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, 필요경비는 자경농민(증여자)등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. 			
합산제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여재산 가산하지 않는다. 상속재산 가산하지 않는다. <p>*단, 증여공제액은 check!!</p>		
<p>* 농업 · 축산업 ·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, 부동산임대소득 제외</p> <p>·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[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(2017.12.19 제목개정)]</p> <p>·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[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(2018.02.13 제목개정)]</p> <p>·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 [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(2018.03.21 조번개정)]</p>				